일시: 2017.6.14.(수) 16:00 장소: 성북배움터(성북구청 3층)

- 2017년 6월 (제43차) -성북구 인권위원회 회의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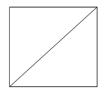


성북구 인권위원회

목 차

1	심의사항	- 조례 및 규칙 제·개정안 - 인권영향평가 결과	•••••	3
2	보고사항	인권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	•••••	9
3	보고사항	인권센터 시민위원 제2기 구성	•••••	10
4	보고사항	인권 전시관 운영	•••••	11
5	보고사항	2017 상반기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적 경제주체 인권교육	•••••	12
6	보고사항	2017 상반기 인권특강	•••••	13

성 북 구 인권위원회



의안번호	
보 고 연 월 일	2017. 6. 14.(수)

심의사항

- 조례 및 규칙 제·개정안 -인 권 영 향 평 가 결 과

보고자 성북구 감사담당관(인권센터)

목 차

1	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	•••••	3
---	--	-------	---

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별지 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의 개정으로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규칙 위임에서 행정자치부령 위임으로 변경되고, 통일된 징계기준인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이 제정됨에 따라 위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임 근거 규칙 제정에 따른 관련 근거 변경 (안 제1조)
 - -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⇒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
- 나.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(안 제2조)
 - 행정자치부령 '별표1'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'별표'와 같이 '징계에 관한 개별기준'을 정하여 시행
- 다. 경고조치 (안 제3조)
 - 행정자치부령 제7조 제2항에 따른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 결시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 경고조치하고 인사기록카드 비고란 에 사실 기록
- 라. 경과조치 (안 부칙 제3조)
- 전부개정으로 인해 시행 전 규칙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둠마.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과 우리구 징계규칙 간 중복되는 '조문'및 '별표' 규정은 행정자치부령을 따름
 - 1)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과 중복 '조문' 삭제
 - 종전 제2조(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)~제10조(의결서의 작성요령)

- 2)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과 중복 '별표' 삭제
 - 종전 [별표1] 징계기준, [별표1의3] 음주운전 징계기준, [별표2] 비위행위 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, [별표3] 징계의 감경기준, [별표5] 징계부 가금 부과 기준
- 바. 현행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」[별표1의4] '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'은 유지하되,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별표 범 위에서 중복항목 삭제 및「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 칙」[별표3] '징계에 관한 개별기준'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징계규칙 개별 기준에 반영 (안 별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
- 2) 지방공무원 징계규칙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2017. 5. ~ 2017. 6.

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서식 (담당부서)

- 조례·규칙 제·개정용

※관리번호		이미어하더기 기구지그		
2017 - 12		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		
조례· <u>규칙</u> 명	서울특별시	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		
관련규정 (고시, 훈령, 규정, 지침, 협약 등)		지방공무원 징계규칙		
	관계부서	대상부서		
	협 의	협의기간		
입법일정 (예정)	입법예고	2017.6.8.부터 2017.6.28.까지(20일간 예정) 매체 : 공보(구보), 기타(구 홈페이지)		
	조례·규칙 심 의 회	2017.07월 중		
	의회상정	-		
첨부자료	필수자료	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(안)		
省十八五	기타자료	근거법령		
※ 검 토	결 과			

-1 11 1	부서명	직 급	성 명	전화번호
작성자	감사담당관	7	박근효	2241-2154

^{「※」}란은 기재하지 말 것

인권영향 점검표(1) 조례·규칙 제·개정용

※ 해당사항에 ○로 표시해 주십시오.

구 분	질 문 응 답			Иа
	관련조항에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?	1 9		
		② 아니오	0	
권리 침해	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?	① 예		
	(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,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)	② 아니오	0	
주민	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	① 예	0	입법예고기간
참여	있습니까?	② 아니오		중 의견제출
구제	제·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	① 예	0	
수단	있습니까?	② 아니오		
기대	제·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?	1 9	0	
효과		② 아니오		

작성요령

- 가. 제·개정되는 조례·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,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'예' 또는 '아니오'에 "○"로 표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
- 나.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'예'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. 그 외,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,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자료명 기재 바랍니다.

※관리번호 2017-12	인권영향평가(공통)점검표
조례·규칙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

	검 토 항 목	검토결과
부 서	1.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?	예회 아니오□
점검표 작 성	2.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 는가?	예ඛ 아니오□
 권 리	3.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 책을 수립하였는가?	예회 아니오□
침 해	4.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침해적요 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,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?	예회 아니오□
주 민	5.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 였는가?	예ඛ 아니오□
참 여 	6.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?	예회 아니오□
구 제 수 단	7.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 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 하였는가?	예회 아니오□
주 민	8.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 는가?	상당한 효과기대□ 약간의 효과기대☑ 해당없음□
참 여	9.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?	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주의필요☑ 인권침해요소 없음□

인권영향평가(조례 및 규칙 제·개정용)점검표

(2017. 6. 14.)

(2017. 0. 1-
조례 및 규칙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
검토항목
1.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·개정으로 인하여, 원치 않는 피해를 보거나 인권 및 권리 가 침해되는 주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?
☑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됨
□ 인권침해 가능성이 일부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판단됨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: (필요시 별지사용)
2. 해당조례 및 규칙의 제·개정내용에 대해 인권담당부서에서 주민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별도로 요청할 내용이 있는가?
□ 별도 요청사항 없음

- 2017년 5월 -성북구 인권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

1. 회의개요

■ 일 시: 2017. 5. 24.(수) 16:00~18:00

■ 장 소: 협업카페(구청 11층)

■ 참 석 자: 9명(김경옥, 김지희, 손민호, 엄혜진, 유의선, 윤성봉, 윤정섭,

이진수, 이철) ※ 정족수 부족으로 간담회로 진행

■ 주요안건

- 조례 제·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의견교환 (조례안 2건)
- O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

2. 회의결과

- 조례·제개정 인권영향평가 의견
 -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안
 - 저출산 극복의 미래지향적 구정 철학 필요함
 - 출산 정책, 지원 사업, 위원회 구성 수정 보완이 필요함
 -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
- O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
 - 조례·제개정 인권영향평가 시행 결과보고
 - 3월 인권위원회 간담회 결과보고
 -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시범실시 연구용역 진행상황 보고
 -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
 - 11기 주민인권학교 운영 및 직원인권교육 보고
- O 이강훈 의원 사퇴
 - 사유 : 재개발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참여

<u>인권센터 시민위원 제2기 구성</u>

O 모집인원 : 총 17명(신규 위원 9명, 재위촉 : 8명)

분 야 인 원		임 기	활동내용	
시민위원	•신규 9명 •재위촉 8명	2년(1회 연장)	인권침해, 차별에 대한 감시 및 개선 제시 인권 캠페인 및 교육활동 참여	

※제1기 인권센터 시민위원 현황 : 총13명(남4, 여9), 임기만료 : 2017. 7. 26

- O 구성방법 : 추천, 재위촉 및 공개모집
- 자격조건
 - 구청, 국가인권위원회, 인권단체 주최 소정의 인권교육을 이수한 사람
- O 접수기간 : 2017년 6월 27일 ~ 2017년 7월 11일(15일간)
- O 선정방법 :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
 - 인권센터 시민위원 심사위원회 구성 : 외부 전문가(2인), 감사담당관,

인권센터장 총 4인

- 외부(2인) : 인권 관련 전문가(연구자, 변호사, 인권활동가, 타 지자체 인권센터장 등)
- 내부(2인) : 감사담당관, 인권센터장
- 일 정 : 2017년 7월 중
- 방 법 : 서류전형(서류전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면접 심사)
- O 선정자 발표
 - 발표일 : 2017년 7월 17일(월)
 - 방 법 :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<u>인권전시관 운영</u>

- 주 제 : 나비 프로젝트 "같이 숨쉬는 나비 호흡(최선 작가 작품)"
 - 장애와 비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 변화
 - 반차별적 인식교육을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
- O 전시장소 : 안암동 인권청사 4층 인권전시관
- O 전시기간 : 2017년 9월 ~ 10월
- O 내 용 : 반차별적 인식 교육을 위한 인권전시관 교육프로그램 운영
- O 참여자
 - 초등학교 3, 4학년
 - 지역 주민, 인권센터 시민위원(2~3명), 인권교육 교사(1명)
 - 작가 1명(최선)
- O 운영 프로그램
 - 체험형 프로그램 : 나비 프로젝트
 - 워크숍 : 참여 아동, 인권센터 시민위원, 인권교육 교사 등
 - 전 시 : 체험형 프로그램, 워크숍 과정 결과물 등 산출품
 - 최선 작가의 '나비 프로젝트'를 중심으로 구성
 - '나비 프로젝트' 종료 후 아동들의 체험을 기록한 영상 상영
 - 완성된 '나비 그림'은 전시장 내 벽면에 설치·전시
- O 전시 예시





2017 상반기 복지시설 종사자 및 사회적 경제주체 인권교육

O 내 용 : 공감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- 성희롱·차별 예방교육

O 참여대상 : 성북문화재단 전 직원

O 교육인원 : 100여명(회차별 50명)

○ 일 시 : 2017. 6. 26(월), 6.27(화) 14:00 ~ 16:00(2시간)

※ 전직원 대상 교육으로 수강인원 및 대직관계를 고려하여 총 2회로 운영

○ 장 소 : 아리랑시네센터 3관

O 교육내용

강 사	내 용	강 사 프 로 필
엄혜진	공감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만들기 : 성희롱·차별 예방교육	-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여성학 교수- 성희롱예방교육 강사- 여성가족부 산하 양성평등진흥원 소속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

<u>2017 상반기 인권특강</u>

O 내 용 : 『함께 행복할 권리-주거권』특강

O 참여대상 : 지역 활동 청년

O 교육인원 : 30명

○ 교육장소 : 성북배움터(구청 3층)

O 교육일정 및 내용 : 2017년 7월 5일(수) 18:00 ~ 22:00

구분	시 간	내 용	강 사	비 고 (강사 프로필)
1강	18:00~20:00	한국 사회 주거권의 역사와 현황, 과제	이강훈	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재개발, 인권법 분야 변호사
2강	20:00~22:00	개발과 주거권 : 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?	이원호	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강제 퇴거금지법 제정위원회 등 10년 이상 주거 및 재개발 현장활동

❖ 제44차 인권위원회 정례회의 일정

- 일 시 : 2017년 7월 12일(수) 16:00

- 장 소 : 성북구 성북배움터